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누구든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안 제180조의4제2항 신설).
-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80조의6 신설).
-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6조의2 신설).
- 금융위원회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

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26조의3 신설).

○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와 마찬가지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443조).

○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 지급정지 요구 위반, 제한명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급정지 조치 통지의무 위반 및 거래제한대상자의 요청 관련 처리결과 통보의무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9조).

II. 검토의견

1. 투자중개업자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임규정을 고시→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 필요(안 제180조의6제2항)

‘무차입공매도’¹⁾ 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한 안 제180조의6은 제1항에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를, 제2항에서

1) 매도시점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것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와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제180조제1항에 의해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으로부터 공매도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①임직원의 공매도 관련 직무 수행시 준수해야하는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하고, ②전산설비(공매도 전산시스템²⁾)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해야하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함.

다만, ‘법인’의 방지조치 의무에 대한 세부사항(법인의 범위, 조치 내용 등)은 안 제180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반면, ‘투자중개업자’의 방지조치 의무에 대한 사항은 안 제180조의6제2항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하여 위임되는 하위법령의 형식을 달리하고 있음.

행정기관은 의무 부과시 의무 주체에 따라 위임 법령의 형식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 권리·의무 관련 사항은 행정규칙보다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투자중개업자’가 취해야 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에 대한 구체적 사항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이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표 1>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2)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잔고 보고실적이 있는 법인 등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전자적 잔고 관리 및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 거래소 중앙점검 시스템에 잔고·장외거래 정보 제출 등의 기능을 갖춘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계획임.

<표 1> 안 제180조의6제2항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차입공매도”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 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0조의6(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투자중개업자는 법인으로 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2.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시 계좌 지급정지 요구(안 제426조의2)

(1) 금융위원회의 지급정지 요구 권한 요건 및 책임 명확화 필요 (안 제426조의2제1항 및 제2항)

안 제426조의2제1항은 제173조의2제2항(장내파생상품 관련 중요정보 이용),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종 행위), 제178조(부정거래 행위),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 행위),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불법공매도)를 위반한 행위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면서, 금융위원회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하여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①금융위원회가 ②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③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급정지 요구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급정지가 침익적 행정처분임을 감안하면 그 요건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의 수 많은 행위 유형을 법률에 열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당한 이유’ 및 ‘상당한 필요’는 단순·추상적 수준의 의심이 아닌, 제426조³⁾에 따라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

3)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

회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 등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가 포착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는바, 불공정거래 피해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지급정지 요구를 하게된다는 입장임.

이를 감안하면, 지급정지 요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입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지급정지 요구 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이 금융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임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인정되는” → “인정하는”)할 필요가 있음(<표 2>의 수정의견 참조).

한편, 안 제426조의2제2항은 지급정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정지 연장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1항과 마찬가지로 연장 여부 판단의 권한 및 책임이 금융위원회에 있음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표 2>의 수정의견 참조).

(2) 필요적 지급정지 해제사유 명확화 필요 :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이익 은닉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 등(안 제426조의2제6항)

안 제426조의2제6항은 ①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

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제1호), ② 지급정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호), ③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제3호), ④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4호), ⑤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제5호), 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급정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6호) 등에는 금융위원회가 지급정지된 계좌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의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르면, 지급정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도 지급정지 결정이 해제되지 않을 여지가 있음.

제재조치의 적용 및 해제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은 해당 조치가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조치 사유의 객관적 존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따라서,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거나(제1호),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제3호) 등에는 지급정지를 필요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필요적 해제 사유로 수정하게 되면 그 요건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⁴⁾하여 제1호 및 제3호(조문정리 후 제

2호에 해당)의 문구를 일부 수정·보완하였음.<표 2>의 수정의견 참조).

한편, 제2호는 지급정지 해제 사유로 ‘지급정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명확한 규정이며 또한 제6호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급정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포섭된다고 보이므로, 제2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표 2>의 수정의견 참조).

(3) 기타 조문 정리(안 제426조의2제7항)

안 제426조의2제7항은 수사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안 제426조의2의 항별 구성을 보면, ① 지급정지의 요건 및 주체(제1항), ② 지급정지 기간(제2항), ③ 지급정지 조치의 통지(제3항 부터 제5항), ④ 지급정지 조치 해제(제6항), ⑤ 하위법령 위임사항(제8항) 등으로 전개되고 있는바, 수사기관에 의한 지급정지 조치를 규정한 제7항은 지급정지의 요건 및 주체에 대한 규정이므로 제1항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표 2>의 수정의견 참조).

안 제426조의2에 대한 이상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표 2>와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4) 금융위원회는 제1호의 경우 명의인이 “특정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특정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 은닉을 위해 명의인이 단순 협조(예: 차명계좌를 대여) 등 “관여한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표 2> 안 제426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경미한 자구수정 포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이하 이 조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항에서 이동>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이하 이 조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라 한다)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사용되었다고 의심되는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라 한다)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해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 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또는 제4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지급정지 중**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 받은 해당 계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계좌의 명의인과 금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수사기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명의인에 대한 통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 또는 제5항에** 따른 통지 유예기간 동안 이를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의 일부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2. 지급정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4.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지급정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대상, 요건, 절차,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이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삭 제) 2. 해당 계좌가 불법이익 은닉에 사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소명되는 경우 3.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통보 등이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 의한 추정보전절차 등이 진행되어 더 이상 지급정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급정지를 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급정지를 유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항으로 이동) ⑧ (개정안과 같음)
--	---	--

3. 금융위원회의 거래제한대상자 통보 :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안 제426조의3제3항)

안 제426조의3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① 금융투자 거래제한(안 제426조의3제1항제1호5), ② 주권상장법인등의 임원선임제한(안 제426조의3제1항제2호6)) 등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안 제42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정보에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자, 관계기관 및 거래소 간 상호 통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제한대상자 및 제한명령 관련 정보7)를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고(제3항),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여야 하고, 관련 사실을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하며(제4항), ③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알게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제5항).

그런데, 개정안은 제4항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에 대한

-
- 5)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 개설, 매매, 대여, 차입 및 그 밖의 거래를 제한
 - 6)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으로서의 선임·재임(在任)을 제한
 - 7) 거래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 거래제한대상자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계좌정보, 제한명령 내용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안 제426조의3제3항 각 호)

금융투자업자의 요청 거부 및 관련 사실 금융위·거래소 통보, 제5항에 따른 거래소의 금융투자업자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위 통보는 각각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반면,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정보의 통보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함.

이에 따라 문언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특정 거래제한대상자의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통보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정보 부족으로 제4항에 따라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음. 특히,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투자업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귀책사유 없는 금융투자업자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로써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제재 공백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고, 금융투자업자의 거래 요청 거부 및 관련 사실 통보 등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한 제426조의3제4항과의 논리적 정합성 등을 감안할 때, 제426조의3제3항의 금융위원회의 거래제한대상자 정보 통보 역시 의무조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의무조항으로 수정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투자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를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표 3>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표 3> 안 제426조의3제3항에 대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신 설>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가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거래제한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거래제한 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